

# 긴급복지지원

## □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주소득자의 사망, 질병, 실직, 화재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중위소득 75%이하 가구
- 지원내용 : 생계의료·주거·복지시설이용, 교육연료·해산장제비, 전기요금 등
- 지원방법 : 위기사유 해당 시 先지원 後조사 원칙
- 사 업 비 : 16,740백만원(국비 80%, 시비 10%, 구비 10%)

## □ 지원기준 한시적 완화

- 시행기간 : 2020. 7. 31. ~ 12. 31.
- 재산기준 : 대도시 188백만원 → 350백만원(162백만원 완화)
- 금융재산 :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%→150%(149~628만원 완화)
- 지원횟수 : 동일 위기사유인 경우도 2년 이내 재 지원 가능
- 위기사유 확대 \*단,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
  - '코로나19에 따른 생계곤란'을 '지자체장 인정 사유'에 포함
  - 코로나19로 인해 주·부 소득자의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
  - 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인 주·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

※ 문의처 : 거주지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 ※

동구청 복지정책과 ☎)608-2563	서구청 복지급여과 ☎)360-7630
남구청 복지정책과 ☎)607-3343	북구청 희망복지과 ☎)410-6289
광산구청 복지정책과 ☎)960-8398	시청 사회복지관 ☎)613-3392
보건복지부상담센터 ☎)129	